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조직 및 정원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관보 발행 및 국무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사이버 보안 및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관리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및 주민 직접 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내·해수면 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관리 고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 재난안전통신망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및 대통령기록관 정보시스템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대전청사관리소에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5명)을 각각 증원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경찰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사회재난 안전기준 적정성 및 영향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역정보화 사업 연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국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법의학부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감축하는 대신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12. ~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운용 및 관리

제9조제15항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1.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22.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운영

2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2.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제11조제10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제7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재난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 운영

제32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정부세종청사 환경·조경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2조제4항제9호 중 “방호인력의 운영관리”를 “방호인력(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정부세종청사 안내(주차)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2조제5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

10.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정원관리 및 예산·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11.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32조제7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부세종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서울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3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춘천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3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양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4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과천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시설과·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부대전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충남지소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충남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충남지소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충남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6. 충남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2. 경북지소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경북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경북지소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경북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6. 경북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39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제44조 중 “4개”를 “5개”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11명”을 “10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57”을 “1,58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55”를 “1,58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525”를 “1,55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6”을 “119”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5”를 “57”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1”을 “2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0”을 “161”로, 전산사무관 “30”을 “31”로 하며, 전산사무관 31(중전의 전산사무관 30) 다음에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83”을 “84”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6”으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2”로, 전산주사 “31”을 “32”로, 방송통신주사 “2”를 “3”으로 하며,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다음에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15”를 “16”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16(중전의 전산주사보 15) 다음에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8”을 “11”로,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1”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통계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 1” 및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570”을 “1,59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68”을 “1,59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538”을 “1,56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6”을 “119”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5”를 “57”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1”을 “23”으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0”을 “161”로, 전산사무관 “30”을 “31”로 하며, 전산사무관 31(중전의 전산사무관 30) 다음에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86”을 “87”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6”으로, 행정주사 · 공업

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2”로, 전산주사 “31”을 “32”로, 방송통신주사 “2”를 “3”으로 하며,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다음에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15”를 “16”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16(종전의 전산주사보 15) 다음에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8”을 “11”로,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1”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통계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 1” 및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104”를 “10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3”을 “104”로 하며, 일반직 계 “103”을 “104”로 하고, 행정주사 “17”을 “18”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05”를 “10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4”를 “105”로 하며, 일반직 계 “104”를 “105”로 하고, 행정주사 “17”을 “1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30”을 “33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외한다) “329”를 “331”로 하며, 일반직 계 “329”를 “331”로 하고, 행정서기보 “7”을 “8로”, 공업서기보 “1”을 “2”로,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7”로, 기계운영서기보 “7”을 “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30”을 “33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외한다) “329”를 “331”로 하며, 일반직 계 “329”를 “331”로 하고, 행

정서기보 “6”을 “7로”, 공업서기보 “1”을 “2”로,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7”로, 기계운영서기보 “7”을 “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29”를 “74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727”을 “746”으로 하며, 일반직 계 “727”을 “746”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3”으로, 행정주사 “16”을 “17”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1”을 “4”로, 임업주사 “4”를 “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를 “9”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5”로, 행정서기보 “8”을 “9”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를 “14”로 하며, “농림운영주사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30”을 “74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728”을 “747”로 하며, 일반직 계 “728”을 “74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3”으로, 행정주사 “17”을 “18”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1”을

“4”로, 임업주사 “4”를 “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를 “9”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5”로, 행정서기보 “8”을 “9”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2”를 “14”로 하며, “농림운영주사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7”을 “4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6”을 “47”로 하며, 일반직 계 “46”을 “47”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재난안전교육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8”을 “4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7”을 “48”로 하며, 일반직 계 “47”을 “48”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재난안전교육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452”를 “45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48”을 “450”으로 하며, 일반직 계 “439”를 “44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을 신설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33”을 “43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00”을 “30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99”를 “301”로 하며, 일반직 계 “299”를 “30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96”을 “298”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87”을 “8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6”을 “87”로 하며, 일반직 계 “86”을 “8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5”를 “86”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9)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2월 28일”을 “2021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운용 및 관리</u>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 ⑭ (생략)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9.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u>
<u><신 설></u>	<u>20.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u>
<u><신 설></u>	<u>21.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정</u>
<u><신 설></u>	<u>22.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시스템 구축 · 운영</u>
<u><신 설></u>	<u>23.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시스</u>

제10조(전자정부국) ① ~ ③ (생략) ④ 전자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u>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u> <u>24.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2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u> 26. ~ 30. (생략) ⑤·⑥ (생략) ⑦ 지역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u> 제10조(전자정부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22.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26. ~ 30.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u>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u> <u>2.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3.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u>
--	---

1. ~ 12. (생략) ⑧ ~ ⑫ (생략)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⑨ (생략) ⑩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12. (생략) ⑪ ~ ⑮ (생략) 제18조(안전정책실) ① ~ ③ (생략) ④ 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3. (생략) ⑤ ~ ⑬ (생략)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 ⑥ (생략)	<u>법인·단체의 육성 지원</u> 4. ~ 15. (현행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u> 13. <u>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u>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u> 11. ~ 13. (현행과 같음)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신설>

⑧ ~ ⑪ (생략)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② (생략)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정부세종청사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14.·15. (생략)

④ 청사보안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방호인력의 운영관리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10. ~ 12. (생략)

⑦ -----
-----.

1. ~ 21. (현행과 같음)

22. 재난분야 위기징후 감시에 관한 제도 운영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정부세종청사 환경·조경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14.·15. (현행과 같음)

④ -----
-----.

1. ~ 8. (현행과 같음)

9. ----- 방호인력(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운영·관리 -----

9의2. 정부세종청사 안내(주차)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10. ~ 12. (현행과 같음)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⑥ (생략)

⑦ 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정부세종청사 시설 관리용
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⑧·⑨ (생략)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②
(생략)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5. (생략)

⑤ -----
-----.

1. ~ 8. (현행과 같음)

9.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

10.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정원
관리 및 예산·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11.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담당공무
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부세종청사 시설분야 공
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⑧·⑨ (현행과 같음)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 · 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 · 지원(기술지도 · 지원은 제외한다)</u> 7. · 8. (생략)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정부서울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 · 지원</u> 3. ~ 5. (생략) ⑤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춘천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 · 지원</u> 6. (생략) ⑥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고양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 · 지원</u> 6. (생략)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 ② (생략)	6. <u>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 · 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7. · 8.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u>정부서울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3. ~ 5.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u>춘천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6.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5. <u>고양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6.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u> 7.·8. (생략)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정부과천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u> 3. ~ 5. (생략)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생략) ② <u>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7.·8.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u>정부과천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3. ~ 5. (현행과 같음)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u>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시설과·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 -----
--	--

장한다.

1. ~ 5. (생략)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7.·8. (생략)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정부대전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3. ~ 5.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조경관리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7.·8.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정부대전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3. ~ 5. (현행과 같음)

⑤ 충남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충남지소의 보안·방호·방화관리

3. 충남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충남지소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충남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신 설>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생략)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관리
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6. (생략)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생략)

6. 충남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⑥ 경북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2. 경북지소의 보안·방호·방
화관리

3. 경북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4. 경북지소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5. 경북지소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6. 경북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공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

6. (현행과 같음)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략)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관리 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u> 6. (생략)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생략)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관리 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u> 6. (생략)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생략)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관리 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u> 6. (생략)	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공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6. (현행과 같음)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공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6. (현행과 같음)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공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6. (현행과 같음)
---	---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 (생략)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천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지원</u>	5. <u>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및 운용</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u>4개</u>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2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 ----- ----- 5개 ----- ----- ----- ----- -----.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② ----- ----- ----- ----- -----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7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0명-----

-----.

⑧ · ⑨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57</u>	<u>1,582</u>	+2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원은 제외한다)	<u>1,555</u>	<u>1,580</u>	+25
·	·	·	
·	·	·	
일반직 계	<u>1,525</u>	<u>1,550</u>	+25
·	·	·	
·	·	·	
행정사무관	<u>116</u>	<u>119</u>	+3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5</u>	<u>57</u>	+2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1</u>	<u>23</u>	+2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 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0</u>	<u>161</u>	+1
·	·	·	
·	·	·	
전산사무관	<u>30</u>	<u>31</u>	+1
<u>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	<u>83</u>	<u>84</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5</u>	<u>6</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 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u>	<u>2</u>	+1
·	·	·	
·	·	·	
전산주사	<u>31</u>	<u>32</u>	+1

•	•	•	
방송통신주사	<u>2</u>	<u>3</u>	+1
•	•	•	
•	•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u>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u>			
<u>또는 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3</u>	+3
•	•	•	
•	•	•	
전산주사보	<u>15</u>	<u>16</u>	+1
<u>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u>			
<u>주사보</u>	<u><신 설></u>	<u>4</u>	+4
•	•	•	
•	•	•	
행정서기보	<u>8</u>	<u>11</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4</u>	<u>11</u>	-3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통계 담당)	1		
<u>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70</u>	<u>1,595</u>	+2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1,568</u>	<u>1,593</u>	+25
·	·	·	
·	·	·	
일반직 계	<u>1,538</u>	<u>1,563</u>	+25
·	·	·	
·	·	·	
행정사무관	<u>116</u>	<u>119</u>	+3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5</u>	<u>57</u>	+2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1</u>	<u>23</u>	+2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 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0</u>	<u>161</u>	+1
·	·	·	
·	·	·	
전산사무관	<u>30</u>	<u>31</u>	+1
<u>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	<u>86</u>	<u>87</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5</u>	<u>6</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 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u>	<u>2</u>	+1
·	·	·	
·	·	·	
전산주사	<u>31</u>	<u>32</u>	+1

•	•	•	
방송통신주사	<u>2</u>	<u>3</u>	+1
•	•	•	
•	•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u>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u>			
<u>또는 방송통신주사</u>	<u><신 설></u>	<u>3</u>	+3
•	•	•	
•	•	•	
전산주사보	<u>15</u>	<u>16</u>	+1
<u>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u>			
<u>주사보</u>	<u><신 설></u>	<u>4</u>	+4
•	•	•	
•	•	•	
행정서기보	<u>8</u>	<u>11</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4</u>	<u>11</u>	-3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통계 담당)	1		
<u>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u>	<u><신 설></u>	<u>1</u>	+1

<u>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본문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4</u>	<u>105</u>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103</u>	<u>104</u>	+1
일반직 계	<u>103</u>	<u>104</u>	+1
.	.	.	
.	.	.	
행정주사	<u>17</u>	<u>18</u>	+1
.	.	.	
.	.	.	

[별표 3의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5</u>	<u>106</u>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104</u>	<u>105</u>	+1
일반직 계	<u>104</u>	<u>105</u>	+1
.	.	.	
.	.	.	
행정주사	<u>17</u>	<u>18</u>	+1
.	.	.	
.	.	.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0</u>	<u>332</u>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329</u>	<u>331</u>	+2
일반직 계	<u>329</u>	<u>331</u>	+2
.	.	.	
.	.	.	
행정서기보	<u>7</u>	<u>8</u>	+1
.	.	.	
공업서기보	<u>1</u>	<u>2</u>	+1
.	.	.	
.	.	.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5</u>	<u>7</u>	+2
.	.	.	
기계운영서기보	<u>7</u>	<u>6</u>	-1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0</u>	<u>332</u>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329</u>	<u>331</u>	+2
일반직 계	<u>329</u>	<u>331</u>	+2
.	.	.	
.	.	.	
행정서기보	<u>6</u>	<u>7</u>	+1
.	.	.	
공업서기보	<u>1</u>	<u>2</u>	+1
.	.	.	
.	.	.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5</u>	<u>7</u>	+2
.	.	.	
기계운영서기보	<u>7</u>	<u>6</u>	-1
사무운영서기보	<u>2</u>	<u>1</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29</u>	<u>748</u>	+19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727</u>	<u>746</u>	+19
일반직 계	<u>727</u>	<u>746</u>	+19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 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임 업사무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	<u>5</u>	<u>6</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u>	<u>3</u>	+2
·	·	·	

·	·	·	
행정주사	<u>16</u>	<u>17</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u>1</u>	<u>4</u>	+3
·	·	·	
·	·	·	
임업주사	<u>4</u>	<u>5</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2</u>	<u>9</u>	+7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u>	<u>5</u>	+2
·	·	·	
·	·	·	

행정서기보	<u>8</u>	<u>9</u>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2</u>	<u>14</u>	+2
·	·	·	
·	·	·	
<u>농림운영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0</u>	<u>749</u>	+19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728</u>	<u>747</u>	+19
일반직 계	<u>728</u>	<u>747</u>	+19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 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임 업사무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	<u>5</u>	<u>6</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u>	<u>3</u>	+2
·	·	·	

·	·	·	
행정주사	<u>17</u>	<u>18</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 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u>1</u>	<u>4</u>	+3
·	·	·	
·	·	·	
임업주사	<u>4</u>	<u>5</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 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2</u>	<u>9</u>	+7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 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 송통신서기	<u>3</u>	<u>5</u>	+2
·	·	·	
·	·	·	

행정서기보	<u>8</u>	<u>9</u>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2</u>	<u>14</u>	+2
·	·	·	
·	·	·	
<u>농림운영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50조제6항 본문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u>	<u>48</u>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46</u>	<u>47</u>	+1
일반직 계	<u>46</u>	<u>47</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재난안전 교육 담당)	<u>1</u>	<u>2</u>	+1
.	.	.	
.	.	.	

[별표 8의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제50조제6항 단서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u>	<u>49</u>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47</u>	<u>48</u>	+1
일반직 계	<u>47</u>	<u>48</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재난안전 교육 담당)	<u>1</u>	<u>2</u>	+1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52</u>	<u>454</u>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u>448</u>	<u>450</u>	+2
일반직 계	<u>439</u>	<u>441</u>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 기제(원장)	1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u>	<u><신 설></u>	<u>1</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33</u>	<u>434</u>	+1
•	•	•	
•	•	•	

[별표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00</u>	<u>302</u>	+2
1.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u>299</u>	<u>301</u>	+2
일반직 계	<u>299</u>	<u>301</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96</u>	<u>298</u>	+2
·	·	·	
·	·	·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및 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u>	<u>88</u>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u>86</u>	<u>87</u>	+1
일반직 계	<u>86</u>	<u>8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5</u>	<u>86</u>	+1
·	·	·	
·	·	·	